

# 産業 構造面에서 본 韓國골판紙包裝産業의 位相

## 1. 골판紙包裝産業의 特性

골판紙包裝 産業特性	解 說	經 營 摘 要
1. 주문 생산성	포장은 상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포장치수, 형태, 강도, 인쇄조건 및 사용시기가 다르므로, 사용직전에 수요자 주문이 있어야 비로서 포장 생산 개시	계획생산 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 큰차이 있음
2. 내수 산업성	골판지포장은 규격, 인쇄사양의 특성, 품질의 다양성, 단납기성, 부피 산업성으로 골판지포장재 자체가 직 수출입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어, 전량 내수 산업성이 있으며, 수요는 GNP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음	1. 수출상품포장으로 간접수출됨 2. GNP부종성에 있어 산업구조 여하에 따라 골판지 포장수요구조가 크게 좌우됨 3. 운송비 고율로 인접국간 직수출 추세 있음
3. 납기 단기성	포장수요자는 상품출하 직전에 주문하는 경향으로 단납기성 있음	1. 골판지포장 공장의 넓은 대지 필요 2. 품질,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 기간 협의 필요
4. 다종·소량 생산성	상품소비자 Needs가 다종 소량화됨에 따라 포장도 다종·소량 Lot성 있음	1. 고도자동화기계 필요 원인 2. 자동화로 기계 Set up 시간 단축 Lose Time 감소 요
5. 원가구성상 원자재 점유비 고율성	골판지포장 원가구성에 있어, 골판지 원지 등 원자재구성비가 60% 전후 고율임	가격의 적정화, Loss를 절감 요
6. 무브랜드성	1. 제품의 품질특성이 없음 2. 골판지포장은 유명 유포상품과 같이 Brand를 보고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었음	1. Brand화, 품질차별화 절실 2. 자가품질표시로 품질 및 신용 창출 요
7. 부피산업성	골판지포장은 부피가 커, Freight Rate가 높음	1. 상·하차 작업 개선 Pallet 수송체제 요 2. 수송노선체제 Computer화 필요

瓦楞紙包裝 産業特性	解 說	經 營 摘 要
8. 産業 용재성	골판지포장은 최종소비자용 상품이 아니며, 사업자인 상품생산업자,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산업용재임	전 산업 연관도가 커, 도매 물가 가중치 큼
9. 경량성	골판지포장은 자중(自重)이 가벼우므로, 운송비 및 창고비의 절감과 하역의 편의를 줌	1. 소체적, 소중량이 근대 포장의 필수조건
10. 단용재 (單用材)성	포장은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여, 상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분배 인도됨이 원칙임으로 1회 사용되는 단용재임	1. Recycle 조건 충족이 요구됨
11. 환경친화 Recycle 재활용 소재성	골판지포장은 100% 회수 재활용되는 환경친화 소재임	회수체계 효율화 대책 필요

II. 韓國瓦楞紙包裝 生産量 世界 9位

순 위	국 명	생산량	비 고
1	미국	33,466	
2	일본	12,268	
3	독일	5,748	
4	프랑스	4,041	
5	이태리	3,878	
6	중국	3,500	추정
7	영국	3,460	
8	러시아	3,000	추정
9	한국	2,611	
10	스페인	2,550	
11	대만	2,200	추정
12	캐나다	2,100	

<1992년 기준>

III. 世界 各國 瓦楞紙箱子·瓦楞紙 Sheet 販賣比較

국 별	제조골판지로 상지제조판매	원단시트 판 매	국 별	제조골판지로 상지제조판매	원단시트 판 매
독일	85.6	14.4	스웨덴	98.5	11.5
벨기에	88.2	11.8	스위스	84.2	15.8
핀란드	95.0	5.0	터키	100.0	0.0
프랑스	87.4	12.6	미국	93.1	6.9
영국	100.0	0.0	일본(시고꾸)	70.5	29.5
이태리	93.0	7.0	한국	73.5	26.5
네덜란드	92.6	7.4			

<단위 : %>

IV. 韓國瓦楞紙包裝産業 發展 推移

항 목	1960	1970	1980	1990	1992	1994	1995	2000
기업체수	4	58	137	163	165	153	150	80
공 장 수	4	58	138	165	167	155	160	120
코루게이터수	4	60	158	192	189	183	187	150
속도(m/min)	10	30	50	150	175	200	200	250
생산능력(백만m <sup>2</sup> )	13	223	1033	2671	3109	3460	3875	4650
생산실적(백만m <sup>2</sup> )	6	108	713	2217	2612	2942	3135	4200
공 정 수	5	5	4	3	3	2	2	1
자동화 수준	수동	부분자동	부분자동	반자동	반자동	전자동	전자동무인화	무인화

V. 中小企業 基本法上 瓦板紙包裝產業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範圍

瓦板紙包裝 製造業 (瓦板紙 및 瓦板紙箱子)	大企業	○ 상시 근로자수가 400인 이상이거나 ○ 자산총액이 700억원 이상인 자
	中小企業	○ 상시 근로자수가 400인 이하이고 ○ 자산총액이 700억원 이하인 자

VI. 政府包裝產業 政策上의 位相

1. 産業合理化 業種	골판지포장산업은 공업발전법에 의거, 동업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 지구력 한계 및 산업구조변화로 건전발전 우려시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됨
2. 中小企業 合併 獎勵業種	중소기업기본법 제 16조, 조세 감면규제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골판지포장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 소득세, 등록세, 지방세, 취득세 면제로 골판지포장제조업의 규모 적정화 유도
3. 有望中小企業 業種	골판지포장제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영세칙 제9조에 의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됨
4. 中小企業 固有 業種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무한시(無限時)로 지정되어, 대기업자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5. 兵役特例 人力 活用 業種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영 대상자 산업인력으로 채용 가
6. 外國人 産業技術 研修 對象 業種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및 동시행세칙에 의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가

VII. 標準産業分類上의 瓦板紙包裝產業

- 근거법령 : 통계법, 통계청고시 제91-1호 (91. 9. 9) 통계청 기준 제10811-3079호 (91. 11. 5)
- 개정시행일 : 1992. 1. 1
- 골판지포장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細分類	産業名	內 容
2				제 조 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102		골판지 및 종이 용기제조업	골판지용원지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 또는 판지제의 용기 또는 상자, 포장용 지지물 또는 셀룰로스 충전물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1021	골판지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직접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골판지제조 · 직접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 (제 외) ·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21024)
			21024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원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및 기타판지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저장 및 판매용상자, 포장용삽입물, 지지성, 칸막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포장용 판지상자제조 ·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 (제 외) · 골판지제조(21021) ·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21021)

4. 골판지포장제조업에 관한 통계청장 有權解釋

통 계 청	1991. 11. 5
기 준 10811-3079	
수 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 목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유권해석질의 회신	
1. 골포협 제91(정책 22)336호(91. 10. 1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조합이 우리청에 질의하신 6차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중 골판지로 직접제조하고 이를 관련적으로 가공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21021 : 골판지제조업"에 분류됩니다.	
통 계 청 장	

5. 1992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골판지포장산업 관련 유권해석 질의문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02-594-0381)

골포협 제91 (정책22) 336호

1991. 10. 11

수 신 통계청장

참 조 통계기준과장

제 목 92년 시행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골판지상자제조업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1.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판지상자제조업』은 34121에서 『제조 또는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분류되고 있으나

2. 귀 통계청고시 제91-1호 (91. 9. 9), 1992년 1월 1일 시행의 개정표준산업분류에는 21021 골판지제조업에서 『골판지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고, 이 분류번호 항목에서는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활동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며

3. 골판지포장산업에 있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고 있는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그 분류표현이 불명하여

4.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자의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업종기록이나 제조한 골판지를 자가투입하여 제조한 골판지상자통계시 산업분류번호 및 업종적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므로

5.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질의 1]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1992년 1월 1일부 시행 개정표준산업분류상 그 어느 산업분류번호 및 업종에 분류되고 있는지 여부?

2. [질의 2] 『제조한 골판지로 제조한 골판지상자』의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1992년 1월 1부 시행 개정표준산업분류상 그 어느 산업분류번호 및 업종을 기준해야 되는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669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 현 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전후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의 분류번호 및 품목 이동 연계상황

개정전 표준산업분류	92. 1. 1 개정후 표준산업분류
(KSIC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제조업 (골판지제조)	(KSIC 21021) 골판지제조업 (골판지제조)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KSIC 34121) 골판지상자제조업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KSIC 21024)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구입한 백판지로 백판지상자제조)
(KSIC 34123) 판지상자제조업	

7. 골판지포장제조업에 관한 미국, 일본국 표준산업분류

① 미국 : 『2653, 골판지상자제조업』 - 골판지원지(라이너 및 골심지)를 구입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생산활동

265	PAPERBOARD CONTAINERS AND BOXES
2652	Setup Paperboard Boxes Establishments primarily engaged in manufacturing setup paperboard boxes from purchased paperboard. Boxes, newsboard : metal edged - mfpm Boxes, setup paperboard - mfpm Filing boxes, paperboard - mfpm
2653	Corrugated and Solid Fiber Boxes Establishments primarily engaged in manufacturing corrugated and solid fiber boxes and related products from purchased paperboard of fiber stock. Important products of this industry include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boxes, pads, partitions, display items, pallets, single face products, and corrugated sheets. Boxes, corrugated and solid fiber - mfpm Container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Display item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Hampers, shipping, paperboard and solid fiber - mfpm Pad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Pallet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Partition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Sheets, corrugated and solid fiberboard - mfpm

② 日本國

2432	골판지제조업	주로 골판지제조와 직접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2453	골판지상자제조업	주로 구입한 골판지로 내부포장용 골판지상자제조
2454	지기제조업	구입한 마나라판지 등으로 판지상자제조
일본국단보류 업계구조의 특징과 그 변화	일본단보류공업회 및 일본 전국단보류 공업조합연합회 발행 단체결성 40주년 기념사에서	段ボール業界の範ちゆうは、コルゲータ設備を有して段ボールシートを生産している企業、シートを生産しつつ製箱部門も併設している企業およびシートを購入して主に外装箱を専門に生産している企業からなる業界(産業分類上では『段ボール製造業』)として捉える。したがって、主に内装箱の生産のみを専門に行う製箱業界(産業分類上では『段ボール製造業』)とは、一應區別されている。そうした範ちゆうにおける段ボール業界の經營形態には、段ボール以外の兼業を除いて ① 段ボール原紙からシート、箱生産までの一貫型、② シートおよび箱生産の兼業型、③ シート生産專業型、④ 箱生産專業型の 4タイプがある。このうちでは ② のシート兼箱生産の兼業型が最も多く、① の一貫型は業界大手のうちのごく少数にかぎられている。

Ⅷ. 골판지상자 제조업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한국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594-0381 代)

골포협92 (정책23)403호

1992. 11. 27

수 신 : 산업연구원장, 한국화학연구소장, 한국펄프 종이공학회장, 국립강원대학교 제지기술연구소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 국립공업기술원장

제 목 : 골판지원지제조업에 관한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필요성여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드릴 말씀은 1991년 9월 9일 경제기획원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토한 바, 골판지원지제조업의 분류가 불명함으로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부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3. 골판지원지제조업 및 골판지포장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및 해설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골판지상자제조업에 대한 포장산업정책입안 또는 실시하는 여러 기관에서 동 개정표준산업분류내용을 수용함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 관계기관의 판단의 기준자료로 제공하고져 골판지포장공업의 핵심주제품인 골판지상자제조업의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판지인 골판지원지(라이너 및 골심지)제조업에 대하여 『21015 크라프트지제조업 (Manufacture of kraft Paper)』에서 『크라프트지라이너제조업』과 『크라프트지 골심지제조업』이라는 용어로 크라프트지와 혼합분류하고 있는 바, 별첨 개정전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시어 동 골판지원지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필요성여부에 관하여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골판지포장공업의 핵심 주제품인 골판지상자제조에 관한 업종 업태에 대하여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당초분류 및 통계청장의 유권해석분류에 의하면, 『골판지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제조 및 직접제조한 골판지를 연관적으로 가공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21021 골판지제조업 (Manufacture of Corrugated Paper : 통계청의 개정당초분류 및 유권해석분류를 종합하면 21021의 업종제목은 21021 골판지 및 동상자제조업 (Manufacture of Corrugated Fiberboard & Its Case)가 되며, 골판지 및 제조골판지에 의한 골판지상자가 포함됨』에 분류되고 있으며 (별첨 개정전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또는 Pad, 윤곽, 칸막이등 포장부속품제조 및 구입한 판지(황판지, 백판지, 마니라판지등)로 판지상자(Carton)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21024 판지상자 및 관련품제조업(Manufacture of Packing Containers and Related Products)』에 분류되고 있는 바(별첨 개정전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이에 골판지상자의 생산판매산업활동상 생산공정의 효율성, 골판지상자의 품질관리, 골판지상자의 생산 Cost, 골판지상자 End User에 대한 소비자 보호성, 업종 구조상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및 업제현황면에서 볼때, 『21021의 골판지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연관적으로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과 『21024의 구입한 골판지(Corrugated Fiberboard)로 골판지상자 또는 포장부속품제조 및 구입한 판지(Paper Board)로 판지상자(Carton)를 제조하는 판지상자 및 관련품제조업』중, 골판지포장공업의 핵심 주제품인 『골판지상자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는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침 : 1.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부분 1부  
 2.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부분 1부  
 3. 골판지상자제조업에 관한 경제기획원 통계청장의 유권해석분류 질의서 및 답사서 각 1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669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IX. 골板紙包裝製造業의 標準産業分類에 關한 펄프 製紙·包裝産業 最高 權威機關의 有權解釋

1. 펄프·제지·포장산업의 최고 권위기관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유권해석 요약

유권해석기관	기관의 성격	유 권 해 석 요 점
1. 산업연구원	국책연구기관	표준산업분류 21021의 직접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임

유권해석기관	기관의 성격	유 권 해 석 요 점
2. 한국 화학연구소	국책연구기관	표준산업분류 21021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이며, 21024는구입한 마니라 판지 또는 골판지로 제조한 판지상자의 범주를 분류한 것임
3.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과학기술처 공인학회	표준산업분류 21021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이며, 21024는 마니라판지 상자 및 포장 부속품 제조업을 주로 분류한 것임
4. 국립강원대학교 제지기술 연구소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	표준산업분류 21021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이며, 21024는 주로 백판지(마니라판지) 제조업에 해당됨
5.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국책연구기관	표준산업분류 21021은 골판지상자의 주된 범주를 분류한 것이며, 21024는 마니라판지상자를 분류한 것으로,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 또는 포장부속품 제조활동을 주로 하며, 소량 Lot, 내부 포장생산 공급에 기여됨.
6. 국립공업기술원	공업기술정부기관	골판지상자 제조공정은 골판지제조에서 상자까지 연속공정 생산방식이 원가절감, 품질관리가 효율적임으로 이를 표준산업분류 21021에 분류해야 함

2. 펄프 제지 포장산업 최고 권위기관의 골판지상자 제조업 주된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전문

① 산업연구원 유권해석

- 문서번호 : 경공 92-703
- 시행일자 : 1992. 12. 8
- 제 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및 골판지분야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회신
- 유권해석 전문

우리나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류 제조업은 1992년 9,800억원에 이르는 큰 시장규모로서 산업구조상 첫째, 골판지상자는 각종 공업제품 및 농산물의 수출용 용기로서 활용되고 있어, 운송중 파손방지를 위한 강도와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음. 둘째, 내수용제품의 유통과정에서도 과자, 농산물, 공업제품 등 대부분의 농·공·수산제품의 운송보관용기로 골판지상자가 활용되고 있음. 셋째, 골판지원지를 제외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등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골판지 및 상자 제조업에 대한 시장성, 적용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준산업 분류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기존 분류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의 필요성이 있음. 당 연구원 경공업연구실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검토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 21015 크라프트제조업에 골판지원지제조업을 포함시킨 분류체계의 개정필요성 여부
  - 의견 : 크라프트지는 얇은 종이인 반면, 골판지원지(라이너와 심지류)는 두꺼운 판지(Paper Board)의 범주에 속하여 생산제품이 상이하므로 선진국에서도 분류하여 각각 독립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음. 따라서 크라프트지와 골판지원지는 분류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한국표준산업분류 21021 골판지제조업과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제조업에 관한 골판지 및 상자류의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 의견 :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1021 골판지제조업에는 골판지와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종이 포함되었고 동분류 21024에서는 골판지는 생산하지 않되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제조업과 판지, 기타상자 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두가지중 어느 것을 지적하는가라는 제조업 범주의 문제는 표준산업분류 21021 골판지제조업 범주의 산업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산공정의 연계성, 산업특성, 세계분류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됨.

3.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 분류방식과 범주해석에 대한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분류의 재개정이 필요함

(1)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내에 골판지원지제조업을 포함시킨 분류체계방식에서 분리구분의 필요성이 있음

(2)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제조업에 포함된 골판지구입후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21021 골판지제조업에 포함시킴으로 현행분류방식에서 동일한 제품생산업종을 2가지로 분류함으로써 통계상의 오류나 정책시행시 해당업종 구분범주의 혼돈으로 인해 동일제조업체가 누락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② 한국화학연구소 유권해석

■ 문서번호 : 연관 700 - 1150

■ 시행일자 : 1992. 12. 3

■ 제 목 : 골판지원지제조업에 관한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필요성 여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범주 유권해석

■ 유권해석 전문

1. 귀조합 골포협92(정책23)403호(1992. 11. 27)의 유권해석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하기와 같습니다.

2. 경제기획원 통계청 고시 제91-1(1992. 1. 1 시행)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골판지원지 제조업이 21015 크라프트지제조업에 혼합분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재개정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데,

※ 종이의 기본 분류에 있어 크라프트지는 종이 Paper의 범주에 속하고, 골판지원지인 라이너(Liner) 및 골심지(Fluting Paper)는 종이두께가 두꺼운 판지(Paper Board)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 종이·판지 업종품목인 신문용지, 인쇄용지, 크라프트지, 박엽지, 골판지원지, 백판지 등 종이·판지의 총 수급량중 판지 또는, 골판지원지의 생산량이 다음 지제품에 비하여 큰 점과 업계의 생산규모현황을 종합하여 볼때, 골판지원지 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 지료별 품종에 따라 라이너(크라프트라이너, 쥬트라이너(Jute Liner)와 골심지(SCP심 또는 펄프심, 특심)를 별항으로 독립분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골판지포장공업의 핵심 주제품인 골판지상자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개정 당초 분류 및 통계청장의 유권해석 분류, 즉, 21021는 골판지제조용 Liner과 골심지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또한 직접제조한 골판지를 연관적으로 가공하여 골판지상자까지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골판지제조업(연속상자 제조업 포함)과 21024는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및 Pad, 칸막이 등 포장부속품 제조와 구입한 판지(백판지)로 판지상자(Carton Solid Fiber Box) 제조하는 2차가공 산업활동이며 판지상자 및 관련제조업중, 어느 것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건데 :

① 골판지포장산업의 핵심 주제품인 골판지상자의 생산판매활동은 주문받은 상자치수에 알맞는 자사보유 재고원지의 지폭과 주문받은 상자의 요구 강도에 맞는 원지평량강도를 결정선택하여 골판지상자제조 첫공정인 골판지를 제조한 후, 제조된 골판지 치수 넓이를 기본설계로 하여, 다음 공정인 Slitting(MD), Cutting(CD), Slot - Creasing, Printing, Jointing 등의 공정을 연속적으로 작업하여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방식이 생산공정의 연계, 포장강도 품질관리효율성 및 생산 Cost 저감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특히 납기가 짧은 포장재의 적기 신속공급이 가능한 것이며,

② 골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상자 또는 Pad, 칸막이 등 포장부속품을 단순생산 판매하는 제상(製箱) 가공 활동은 골판지를 직접제조하고 이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연속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활동보다는 상자 중간 제품 Blank인 골판지 Sheet의 이동을 위한 수송비의 이중부담과, 골판지 판매이익의 가산 등으로 생산 Cost가 비싸게 되는 점과 골판지상자 사용자의 주문시기와 골판지 Sheet의 주문, 생산수송, 상자제조의 시간 지체에 따른 최종골판지상자 강도에 경시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때문에 골판지상자 제조업하면 골판지제조공정에서 골판지상자까지 제조하는 일관생산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임. 또한 업계 규모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21021 골판지제조업의 골판지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직접 제조하고, 제조한 골판지를 일관적으로 가공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세계적 관행(Practice)입니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 21024는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으로 21021에서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및 Pad, 칸막이 등 포장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2차가공 산업활동으로 자회사에서 제조한 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직접 제조하는 21021의 산업활동과는 보완적관계의 산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21024의 주된 산업활동은 구입 백판지, 마니라 판지로 판지상자(Solid Fiber Box) 제조업의 범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1024의 판지상자(Solid Fiber Boxes)는 골판지상자(Corrugated Box)와는 다르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 ③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유권해석

■ 문서번호 : 펄공 92-81

■ 시행일자 : 1992. 12. 2

■ 제 목 : 골판지원지 제조업에 관한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필요성 여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회신

■ 유권해석 전문

1.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에 분류되고 있는 골판지원지(라이너 및 골심지)는 지류 품종 대종 분류인 종이 및 판지(Paper & Paperboard)에서 불때, 판지 즉, Paperboard에 속하고 동 표준산업 분류 21015에 분류되고 있는 크라프트지는 종이 즉, Paper에 속하는 것이며, 이 두 지종은 용도가 다른 별개의 품종임으로 통계적 견지 또는 골판지원지 공업의 규모 비중으로 보거나 지종별 수급계획 및 제지공업 정책 입안 실시의 효율성면에서 불때,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21015 크라프트 제조업의 크라프트지제조업과 골판지원지 제조업을 혼합, 분류하는 것보다 크라프트지 제조업과 골판지원지 제조업을 각각 분리, 분류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2.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통계청장의 유권해석 분류 21021의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직접 제조한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21024의

구입한 골판지상자 또는 Pad, 칸막이, 윤곽 등 골판지포장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비교할 때, 21021의 골판지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일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① 연속공정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② 골판지제조 공정에서 골판지상자 설계치수와 설계품질을 연관시켜 원지를 배합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포장품질관리, 손모을 관리, Cost관리, 원가절감 효과가 큰 점과, ③ 국제 경쟁력에서 본 생산규모 효율성이 큰 생산방식이라고 판단됨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분류는 21021의 골판지를 제조하고 제조한 골판지에 의한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21024의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은 판지 즉 백판지, 마니라판지 등의 판지상자 제조업과 포장 보조재료인 Pad, 칸막이 등의 제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분류체계상 상당하다고 보며,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또는 포장부속품 Pad, 칸막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소량 포장재 공급면에서 그 역할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④ 國立江原大學校 製紙技術研究所 有權解析

■ 문서번호 : 창강 92 - 12 - 2

■ 시행일자 : 1992. 12. 5

■ 제 목 : 골판지원지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개정 필요성 여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범주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회신

■ 유권해석 전문

1. 질의 제 1사항인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건은

가. 제지공업에 있어 종이(Paper), 판지(Paperboard) 및 종이제품(Paper products) 분류 중, 크라프트지는 종이에 속하고 골판지 원지인 라이너와 골심지는 판지에 속하여 서로 같이 분류할 수 없고,

나. 크라프트지와 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는 종류, 생산공법 및 그 사용처가 다를 뿐 아니라,

다. 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 제조업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라프트지 제조업과 골판지 원지(라이너 및 골심지) 제조업을 따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학문적이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질의 제 2사항인 「골판지 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의 건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21021에 대한 통계청 기준 10811-3079(91. 11. 11)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 국내 및 세계 각국의 골판지 제조업 구조면이나

나. 수요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주된 골판지 상자 제조시 상자의 전개도 지폭과 강도에 걸맞는 골판지 원지를 배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의 골판지상자를 연속공정으로 생산함이 생산공정이나, 품질 관리 면에서 그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1021은 골판지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된 골판지로 골판지 상자를 연속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그 범주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21024의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의 건은 주로 백판지 상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1024에서 언급한 구입 골판지로서의 것은 21021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⑤ 産業디자인 包裝開發院 有權解析

■ 문서번호 : 연구 24

■ 시행일자 : 1992. 12. 12

■ 제 목 : 골판지원지제조업에 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정 필요성 여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회신

■ 유권해석 전문

1. 골판지원지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 한국표준산업분류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에 크라프트지 제조업과 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 제조업이 혼합 분류되고 있는 바, 크라프트지와 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를 비교하면,

— 현재 크라프트지는 주로 지대제조용으로만 사용되지만, 라이너 및 골심지는 수송포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골판지상자원단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 크라프트지는 신장율·인장강도 등의 물리적 특성이 요구되고, 라이너나 골심지는 파열강도 및 압축강도가 필요한 재료로서 그 생산기법이나 연구방향이 서로 다른 분야로서,

○ 실제적으로 골판지원지 제조업의 산업활동 비중이 더 크다고 분석되므로 크라프트지 제조업과 골판지원지제조업은 독립업종으로 분리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골판지상자의 용도가 주로 겉포장이나 수송포장인 만큼 골판지원지 생산량 통계를 분리 작성한다면 전체 산업의 출하량 변화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장점도 가질 수 있음.

2.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범주에 관한 의견

○ 골판지 제조업의 주제품인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21021 "골판지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직접 제조한 골판지를 연관적으로 가공하여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1024 "구입한 골판지 및 기타 판지로 상자제조 및 포장용 삽입물, 지지물, 칸막이 등 포장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및 정의되고 있는 바,

— 구매자가 요구하는 골판지상자의 설계치수와 파열강도에 맞추어 골판지 제조공정에서 라이너 및 골심지의 지폭과 평량을 감안하여 원료를 배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고, 이 골판지 원단으로 연속적으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생산방식이

● 공정관리·품질관리·원자재 Loss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 대량 Lot처리와 단기적인 납기가 특성인 골판지상자 납기 이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 골판지를 제조하고 그 골판지로 연속적으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생산방식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 한국표준산업분류 21021의 "골판지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제조 및 제조한 골판지로 연속적으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주된 범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21024는 판지상자(마닐라판지, 백판지상자 등) 제조업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며, 21024에 분류된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제조 또는 칸막이, Pad, 윤곽 등 포장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소량 Lot, 내부포장용 골판지상자 및 관련품의 생산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⑥ 國立工業技術院 有權解析

■ 문서번호 : 문성 28450 - 695

■ 시행일자 : 1992. 12. 31

■ 제 목 : 골판지포장산업 분류에 관한 질의 회신

■ 유권해석 전문

가) 문항 1에 대한 회신

1) 현재 크라프트지 제조업(21015)에 분류되어 있는 크라프트지 라이너 및 크라프트지 골심지는 Virgin Grade의 크라프트 펄프로 제조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골판지원지인 라이너 및 골심지는 고지를 주재로 제조하고 있어 이들을 같이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2) 일반적인 종이, 판지의 분류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는 평량이 120g 이상으로 판지에 분류되므로 이를 크라프트지와 같은 종이류와 함께 분류하는 것도 부적절함. 따라서, 표준산업 분류상 라이너와 골심지 등 골판지원지는 상자용 판지 제조업(21016)에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나) 문항 2에 대한 회신

1) 골판지상자 제조공정은 골판지 제조에서 상자까지 연속공정(Continuous Process)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한국 75%, 일본 70%), 연속공정 생산방식이 원가절감, 품질관리 등에서 보다 효율적임.

따라서,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체가 연속공정으로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골판지 제조업(21021)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